

독일판례 2

특별한 사정에 의한 출판계약의 해지

쾰른고등법원

1986.3.27 자 판결 -6U 18/86 사건

적용법조

독일민법 제 626 조, 723 조

판결요지

1. 독일민법 626 조, 723 조를 준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자가 출판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독일민법 626 조를 유추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법 626 조 2 항의 엄격한 기간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출판계약의 해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해지가 부당할 정도로 장기간이 경과한 후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다.
3. 출판업자가 저자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그 인세 등을 적시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출판계약의 해지는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판결이유

「Heinrich der Lowe」라는 책에 1976. 2. 15 자 출판계약 및 「Gotz Friedrich-Musiktheater」라는 책에 관한 1978. 1. 20 자의 출판계약은, 1984. 10. 9 자의 원고의 해지가 있었고, 위 해지가 1984. 10. 10 피고에게 도달됨으로 인하여 1984 12. 31 에 종료되었다. 원고는 위 출판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

근거는 출판법 자체에는 저자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출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독일민법 626 조, 723 조를 유추 적용하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BGHZ 15, 213, BHG GRUR 1964. 329 ; GRUR 1974.789 , 1977, 551ff : OLG Munchen, GRUR 1980. 913, Hab-erstump/Hintermeier, Einfuhrung in das Verlagsrecht 1985.S,66, 215ff 참조).

독일민법 626 조를 유추 적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독일민법 626 조 2 항의 엄격한 기간이 출판계약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BGH, GRUR 1977.554 「Textdichteranmeldung」, NJW 1982.641f 「Musikverleger III」참조) 그러나 해지권자의 행동으로부터 미루어서, 상대방의 계약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약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추측이 가능할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까지도 위 해지가 허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BGH, GRUR 1977.554 참조). 여러 가지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해지사유가 위 적절한 기간 내에 존재하고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그 밖의 해지 사유들도, 위 해지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참고로 될 수 있다(die Nachweise bei Palandt – Putzo, §626BGB Anm.3b, ee 참조) . 출판계약의 경우에 요구되는 신뢰단계라는 것도, 선의의 경우에 있어서 조차 서서히 소멸되어, 결국은 그 단계가 파괴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의무의 위반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단계가 「파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Haberstumpf/Hint-ermeier, a. a .O.S.216) . 본 건에 있어서는, 1984 년 전반기분에 대한 인세의 불지급 및 S 출판사가 위 두 가지의 책에 관한 발행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2 가지의 계약위반사항은 원고가 해지를 한 후 시간적으로 바로 인접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위 해지가 지나치게 늦게 행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위 해지사유의 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원칙에 따라서 나머지의 모든 해지 사유들이 함께 참작되어야 한다. 원고가 그의 준비서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계약위반 사항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는 바, 위 주장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인세를 적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책의 판매실적을 적시에 원고에게 알려 주지도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책의 저자가 오로지 그 인세로만 생활을 영위하지는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의 인세를 누차의 독촉을 하고서야 비로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자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위 출판계약을 원고가 해지한 것은, 피고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1983 년 말경에 이미, 피고가 그 출판계약상의 의무를 장차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